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3. 2 - - - - - 김성오의원외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9. 3.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9.3.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승정 의회운영위원장)

가.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수당 미지급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수당 미지급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제8조 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지방의원에게 효율적이고 완벽한 결산검사 직무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코자하는 것으로
- 이는 관계법령과 타 구·군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교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